

제 494 호

1975. 4.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운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조례

제 938 호 :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추가) 토지구획 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	3
제 939 호 :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4
제 940 호 :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8

◎규칙

제 1459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	14
---------------------------------------	----

◎고시

제 39 호 : 사료설문등록고시	21
제 40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22
제 41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2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23
제 44 호 : 비료판매영업등록고시	24
 ◎ 공 고	
제 7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종합시설) 완료공고	24
제 76 호 : 환지예정지 변경지정공고	
제 7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25
 ◎ 사 령	

조 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4월 7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38 호

서울특별시영동제 2 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7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 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부과총액)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금,

기체이자 및 사무비의 총액에서 약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잠수임

3. 체비자 대작대금

제 3 조(부담금부과기준) ①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인가전과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평가액의 증차액 또는 환지처분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토지평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공인감정사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 및 현지에 설계를 표준으로하여 동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환지처분시에는 노선가산률 방법에 의한다.

③전 2 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욕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부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한 토지를 제공할 때

29-4 제 494 호

시

1975.4.7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동 또는
불건을 제공할 때
3. 지방세법제 184 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부담금의 부과시기 ,
납입기간 , 납입방법 , 납입장소는 시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 조 (부담금체납처분) 부담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
정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부담
금을 추징할 수 있다 .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
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4. 5

◎ 서울특별시 조례 제 939호

서울특별시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
다)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 1974
년 3 월 30 일자 서울특별시에게 시행
을 명한 서울영동제 2 지구 (추가) 토
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및 지구) ①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은 서울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 사
업이라 한다 .

② 이 사업지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치동일부 (85,369m²) 로 한다 .

제 3 조 (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 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법 제 75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

로 정한다.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충전토지) 환지교부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표준이 될 충전토지의 자질의 면적은,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일가일 현재의 토지대상 및 일약대장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8 조 (중명및분할) ①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중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충전토지 및 환지의 변경 및 분할은 공공계획에 의한것외에는 소유자신청에 의하여 분할 또는 변경한다.
제 5 조 (토지의 가격 평가) ① 사업시행전 또는 시행후의 토지자질의 가격평가 는 한국감정원의 감정, 공인감정사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 및 그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교통, 환경등 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후 공공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가격 을 부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의에 의하고 법 제 48 조 내지 제 51 조 및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 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충전토지 또는 그위치 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하며, 제 3 항내지 제 6 항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토지 사용)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풍공용지 및 체비지 지정으로 인하여 원위치근처에 지정할수 없을때는 계획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 할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환지예정지 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p>③법 제 32 조에 의한 인가일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표준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p> <p>④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체비지는 제 1 항의 규정에 구애함이 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p> <p>⑤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토지 수용법의 제 1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 규정에 불구하고 중환지 또는 감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만,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권리면적보다 중환지된 면적은 제 5 조에 의거 정리후 평정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징수한다.</p> <p>⑥지방세법 제 7 조 1 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중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중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환지 면적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하여 이를 금전으로</p>	<p>징수한다.</p> <p>⑦기존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폭원의 연도부담으로서 부담한다.</p> <p>⑧기존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대변경하지 아니하는한 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연도부담은 1/2로 감한다.</p> <p>⑨공통부담은 종전의 토지를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p> <p>가. 1 급지 : 공부상대 또는 기존건물이 접유한 토지</p> <p>나. 2 급지 : 공부상 전인토지</p> <p>다. 3 급지 : 공부상 담, 임, 잡종지 및 기타토지</p> <p>제 10 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하여 종전지적이 65%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나 사업상 또는 경상에 따라 현저히 필요하다고 인정될</p>
------------------------------------------------------------------------------------------------------------------------------------------------------------------------------------------------------------------------------------------------------------------------------------------------------------------------------------------------------------------------------------------------------------------------------------------------------------------------------------------------------	------------------------------------------------------------------------------------------------------------------------------------------------------------------------------------------------------------------------------------------------------------------------------------------------------------------------------------------------------------------------------------------------------------------------------------------------------------------------------------------------------------------

시는 환지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90일이 만으로 환지할수 있다.	임정될때에는 전조의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가환지를 지정할수 있다
②현재 기존시설물이 있을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청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때에는 환지증관분에 대한가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으며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금전청산에 의한 처분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의 평정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하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 11 조(사유지에 대한 환지불교부) ①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이사업으로 인하여 이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할수 있는데에는 이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청산(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산금을 분할 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때에는 년 22%의 이자를 가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의한 청산은 환지처분과동시에 법제 52 조의 규정에따라 하여야 한다.	제 16 조(환지처분) ①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환지처분을 할수도 있다.
제 12 조(환지예정지지정) 법제 56 조의 규정에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지처분을 할때에는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가환지예정지지정) 기존건물 및 공작물 이전등 필요가 있다고	

29-8 제 494 호

시

1975.4.7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7 조 (재비지의 체정 및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될 재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시행하도록 해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동부담을 1급지 (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8 조 (등기 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의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초본, 지가배부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가배부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령보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 19 조 (대리인신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 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5. 4. 7
제 20 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명의변경)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 조례 제 940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령보상 조례
제 21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시공) ①법 제 39 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을 하고자 신청이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에 맞추어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령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

<p>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것이 성질상 그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p>제 3 조 (권리의 시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p> <p>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 3 자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p>	<p>제 4 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 5 조 (보상금의 관장)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p> <p>제 6 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자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7 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 6 조 및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8 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p>
------------------------------------------------------------------------------------------------------------------------------------------------------------------------------------------------------------------------------------------------------------------------------------------------------------------------------------------------------------------------------------------------------------------------------------------------------------------------------------------------------------------------------------	--------------------------------------------------------------------------------------------------------------------------------------------------------------------------------------------------------------------------------------------------------------------------------------------------------------------------------------------------------------------------------------------------------------------------------------------------------------------------------------------------------------------------------------------------------------

29-10 제494호

부 시

1975.4.7

제 9 조 (출원) ①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국 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질 때까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라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 6 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 실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승계결 정에 대한 심의
2.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시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 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특허등록등의 통지) 시장은 제 12 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제 15 조 (등록보상금) 시에서 등재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권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은 시가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한 때에는 제 1 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 이하	제 17 조 (특허권의 처분보고) 시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특허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실시·허여 또는 기타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시장은 직무발명보상금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16 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제 20 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 15 조 한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제 19 조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 18 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및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발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 24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21 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p>(1) 발령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 15조 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 발령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발령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p>	제 21 조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p>② 위원장은 제 1부시장,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환경국장, 산업국장, 농지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관광운수국장, 전설국장, 수도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p>
제 22 조 (보상금의 불반환) <p>발령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 (齋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 25 조 (위원장) <p>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제 23 조 (위원회의 설치) <p>직무발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무발령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제 26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p>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령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령의 서울특별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사항	서울특별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승계한 경우에는 제 15조 내지 제 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 16조 내지 제 22조를 각각 준용한다.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7 조 (위원회의 의사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회는 제적위원 (위원장과 포함한다)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1 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또는 하여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28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서무를 처리한다.	제 32 조 (비밀보자)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9 조 (운영의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 33 조 (직무발명상황보고) 서울특별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상봉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제 3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20-14 제 494 호 시

보 1975.4.7.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5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처부
발명보상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명의 신고) (1)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
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2)조항 제 1 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3)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
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등의 가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 (공무원)의 임무

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
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
술한다.

4. 직무발명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 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 39조 및 제 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 3 조(신고전출원) ①조례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제 10조제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 7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 4 조(심의요청) ①조례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설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전항제 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

③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제 1항제 3호의 발명설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p>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을 기술한다.</p> <p>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p> <p>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p> <p>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p> <p>제 5조 (특허등록통지) ①조례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제 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증 특허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자의 제적, 전적 또는 회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 6조 (변동사항의 보고) ①조례 제 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조례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통��를 한 후 당해인의 신상등의 변경사항</p> <p>2. 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p> <p>제 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조례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전항 제 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제 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 1항 제 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 2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p>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제 494 호

시

보

1975.4.7

29-17

<별지 제 1호 서식>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발 명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본 명				
주 소				
발 명 사 항	현 소 속	현 지 제	직위 또는 직급	현 지 제
		발 명 당 시	지 금	발 명 당 시
발 명 의 종 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 명 의 자	직무발명	
발 명 의 명 칭		성 질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 6조 및 동시회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신고년월일 19 . . .

신 고 인

④

서 울 특 별 시 장 권 하

첨부 : 발명명세서 1부

1754

29-18 제 494 호

시

보

1975.4.7

<별지 제 2호 서식>

발명 심의 요청서

발 명 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현재		직현재	
속발명 당시		채발명 당시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승제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년월일 19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견서
 3. 특허증사본

<별지 제 3 호서식>

특 허 (고 안) 등 록 통 지 서

특 허 자	발 명 주 소	성 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록 자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명칭			
등 록 자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등 급 자	본 주 소	성 명	(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특 보 상 금	소 속	현 체	직 체	
	발명당시		체 발명당시	
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지급결정액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료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같이 통지함.

19 . . .

서 울 특 별 시 장 ④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29-20 제494호

시

보 1975.4.7

<별지 제4호서식>

자유 발명 (특허권) 양도신청서

발 명 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재	현		직	현	재
속	발명 당시			책	발명 당시
발표 명	발명의 종류			발명의 내용	
의시 발명 의명칭	특허, 실용신안, 의장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명(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①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

고 시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

고시제 39호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에 대한

등록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 행규칙
제 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한다.

1975. 3. .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 등록사항

공장명	소재지	대표	사료			사료성분량				유효 기간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성유	조회근	
양주지구 속 산 법동조합	도봉동 282의 44	양학승	배합 사료	큰병이리 전기 후기 산란말기 부리일리 후기 2 육체중계 사료 젖 소 큰송아찌 고깃 소 큰송아찌 임신전기 끼치 고깃 소 전기 고깃 소 증기 고깃 소 후기 종 모 우 사 료	큰병이리 13~16주 전기 17~초산 후기 36주이상 부리일리 출하 1주전 후기 2 육체중계 사료 젖 소 큰송아찌 고깃 소 큰송아찌 임신전기 끼치 고깃 소 고깃소전기 전기 고깃 소 고깃소증기 증기 고깃 소 고깃소후기 후기 종 모 우 사 료	13.0이상 12.0 14.0 16.0 15.5 13.0 14.0 14.0 14.0 15.0 13.0 11.0 12.0	%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 7.5이하 7.5 7.0 6.0 7.0 10.0 10.0 10.0 9.0 10.0 10.0 10.0	% 3.0이하 9.0 13.0 9.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3.0이하 3.31~ ~ ~ ~ ~ ~ ~ ~ ~ ~ ~

29-22 제 494 호 시

보 1975.4.7

◎서울특별시고시제 40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3.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사

시설명	위치면적	비고
시장 중구남창동32-2 대의 630필지 중구남창동31-1 대의 52필지	24,253㎡	(1) 남창동 52-5도는 도로로 시설확보 하는 조건부로 결정 (2) 남창동 4-3 대(880㎡)는 도시계획 재개발지구에 저축되므로 시장용지 결정에서 계획함.

※ 법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41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
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3.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사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장	용산구보광동224-1, 280-8 용산구후암동 103-9 의5필지	1,637坪 742.8坪	보광시장 후암시장 (도로계획선에 저촉된 물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결정)

*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관할구청 (출장소)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7 호 (74.12.16)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된 도시
계획사업 (학교시설)의 시행을 다음
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사
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과에 각
각 비치하여 도지소유자 및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 : 도봉구중계동산 6-1
의 9필지

나. 준공 : 1976.3.31

2. 사업종류 및 명칭 : 학교시설사업

6. 위치도 및 계획면도 : (별첨)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별첨).

4. 사업시행면적 : 3,336坪 (11,000m²)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가. 착수 : 1975.3.

29-24 제 494 호

서 보

1975.4.7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 호

비로 판매 영업 등록 고시

비로판매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 영업등록을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5. 4. 8.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 년 월 일	판매자 주소 성명 및 판매장소 제지	비로의 명칭	보증 성분량	기타 규격
1-4	등록 1975.4.8.	1. 주소 성명 서울 종로구 충신동 189 의 1 이 춘 설 2. 판매 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46 홍농종묘주식회사	제 5 종복합비로 (액체비로) (일명, 비왕)	농수산부고시 제 2518 호에 의한 공정규격	

1. 유효기간: 1975.4.8 ~ 1977.4.7

2.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 고

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종합시설)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호(73.9.25)로
시행하기로 도시계획(학교시설) 사업이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제 1항 및 동법제 46조 제 3 항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
계획과 및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2.

서울특별시장

- | | |
|------------------------------------------|------------------------------|
| 1. 사업집행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문동
363의 2 의 3 필지 | 3. 사업시행면적: 3,733 평 |
| 2. 사업명: 도시계획사업(학교종합
시설)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 | 5. 사업기간: 73.9.25-74.8.31 |
| | 6. 준공도면: 준공도면 생략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6 호

환지에 정지 변경지정 공고

- 서울특별시 창동, 경인, 역촌, 양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서울특별시공고 제 16 호(75.1.30)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에정지 지정을 별첨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6 조와 해당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미완료 또는 다른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된다.
-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구획정리 1 과와 관할구청 및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을한다.

첨부 : 환지에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조서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 및 관할구청과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

1975. 4. 2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7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설계계획 공람 공고

- 건설부고시 289 호(74.8.26)로 고시된 산업대학 진입로 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설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8

서 울 특 별 시 장

29-26 제 494 호

시 보

1975.4.7

공 람 개 요	출장(홍콩)을 명함. 예산담당관 지방행정 실(담당관) 주방행정사 김종도 75.4.1~4.10까지 해외기 술홍련규정에 의한 해외출 장(홍콩)을 명함.
1. 사업의 시행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 1975. 4. 2 영등포구(건축과장직무대리) 기 술홍련규정에 의한 해외출 장에 대하여 그직을 면함.
2. 사업의 종류 및 평정 : 산업대학진 입로 확장 공사	◎ 1975. 4. 3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박용창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교학 과 교무제장 직무대리를 명함.
3. 사업의 규모 : B = 15 m L = 122 m	산업국장 부이사관 노이식 이사관에 임함. 1호봉을 급함.
4.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 서기관 국옹호 부이사관에 임함.
5. 사용차수 및 준공예정 : 75. 2. 3 ~ 75. 5. 30	1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보함.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 1975. 4. 5 마포구 기사보 정진화 지방토목기사에 추서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 재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 1975. 4. 7
사 령	
◎ 1975. 3. 27 마포구 서기보 정연호 경상북도 영천군 전출을 명함.	
◎ 1975. 4. 1 구획정리 2과 지방토목 (환지제장) 기사보 정영호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예산담당관실 서기판 김점창 75.4.1~4.10까지 해외 기술홍련규정에 의한 해외	

제 494 호

시

보

1975.4.7 29-27

위생연구소 지방보건 연구사보 임봉택 75.4.7-76.3.20 까지 해외 기술훈련유점에 의한 해외출 장(일본)을 명함.	황선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보건 기사보 이재구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호) 강봉 6월처분을 동 일자로 강봉 3월에 처함.	윤명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정신병원근무를 명함.
송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고동옥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호) 강봉 1월처분을 동 일자로 전체에 처함.	박미자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보건소 기원보 박원종 서울특별시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호) 강봉 1월처분을 동 일자로 전체에 처함.	채순자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 1975. 4.10	장해영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최경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김영옥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금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박 경희	서대문구보전소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성북구보전소 지방간호 기관자 역등포구보전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보전소 지방간호 기관자 김원배
마동병원근무를 명함.		성북구보전소근무를 명함.
	도영희	영등포구 보전소 지방간호 우애순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지방간호 김은란
여동포병원근무를 명함.		성동구보전소근무를 명함.
	김명숙	서대문구 보전소 지방간호원 최인숙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 임함.		판약구보전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보전소 지방간호원 김숙경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판약구보전소근무를 명함.
	조순임	영등포구 보전소 기원보 박형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판약구보전소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기사보 이영필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경북진설국 치수과사무관	용산구근무를 명함.
	김치운	용산구 기사보 한무길
서울특별시전임을 명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영등포구 기사보 이무부
7호봉을 급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문화공보실 공보제장에 보함.	문화공보실 공보제장	마포구 기사보 한대인
독자과임정제장에 보함.	한상균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기사보 신명기
성동구보전소 지방간호	김순임	

종로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기사보	지방건축원	유기태
종로구기사보	정희중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이재활		지방건축원	최선규
양서출장소 기사보				
용산구근무를 명함.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건축	김규태		영등포구기원보	이준환
용산구기사보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	배석중		마포구기원보	이수정
마포구기원보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중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이원웅
영등포구 지방건축	박태문		기원보	
용산구근무를 명함.			중로구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건축	김성연		종로구기원보	김기수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건축	김평현		양서출장소 기원보	남동승
마포구근무를 명함.			중로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	유영근		용산구 지방건축	강해준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기원보	

서 울 특 별 시 장